

4.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4,278號 1994. 6. 1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①법 제8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라.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체신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 마.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이상일 것. 다만,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가 199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의 저축불입기간은 별표에 8에 의한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체신보험의 경우에는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 ②법 제8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 저축 취급기관은 저축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분과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법 제80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

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개인연금저축 불입기간(제75조의2 제1항 제3호 관련)

가입자의 출생연도	불 입 기 간	
	1994년 가입시	1995년 가입시
1949년	10년이상	9년이상
1948년	9년이상	8년이상
1947년	8년이상	7년이상
1946년	7년이상	6년이상
1945년	6년이상	5년이상
1944년이전	5년이상	5년이상

□ 개정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저축불입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여 주는 개인연금저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세지원이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요건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개인연금저축은 가입대상을 만 20세이상인 자로 하고, 매월 또는 3월마다 월 기준 100만원(3월마다 불입시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10년이상 불입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으로 함(영 제75조의2 제1항).
- 나. 저축계약일부터 5년내에 중도해약시에는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75조의2 제2항). 〈법제처 제공〉

장인혼을 현장에 한국혼을 세계에